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11월 0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담당자 : 송경태

문의전화 : 061-390-7606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성 *열 1959-11-10	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0년 10월 22일

삼계면장 